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중장기증권투자신탁[채권]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6. 6. 3.

□ **정정 사유** : 이익 분배 방법 변경

□ **정정 내용**

항목	정정전	정정후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
<b>5. 운용전문인력</b>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6. 4. 30. 기준</u>
<b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b> 가. 이익 배분	<p>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<u>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p> <p>※ “2016년 4월 일”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</p>	<p>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><u>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b></p>

	<p><u>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u></p>	
--	---	--